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사례가 급증하여 부정청약을 예방 및 근절하고자 부양가족 인정 기준 및 실거주 여부 확인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의 부양가족 요건을 강화하고, 실거주를 검증하기 위한 추가 서류 제출을 의무화함

법제처 유권해석 권고 등에 따라 국민에게 혼동을 초래하지 않도록 부양가족의 해외체류 기준과 노부모 부양자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에 따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같은 법 제41조”로, “3년간(나목의 경우에는 1년간)”을 “3년간”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를 “등재되어 실제 같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로 한다.

제52조제1항 본문 중 “국토교통부장관에게”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게”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 6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 “사업주체 또는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을 “사업주체”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1) 및 2) 본문 중 “등재된”을 각각 “등재되어 실제 같이 거주하고 있는”으로 하고, 같은 목 3) 중 “1년”을 “3년”으로, “등재된”을 “등재되어 실제 같이 거주하고 있는”으로 하며,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의 기간 내에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미만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면 과거에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이력이 있더라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3조(주택공급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 ① (생략)	제23조(주택공급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 ① (현행과 같음)
② 주택의 공급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는 주택의 공급신청 시에 제출하지 않고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2호의2 및 제10호에 따른 서류는 당첨된 날부터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② ----- ----- -----. ----- ----- ----- ----- ----- ----- -----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만 해당한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u>3년간</u> (나목의 경우에는 1년간)의 내역	10. ----- -----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에 따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같은 법 제41조----- ----- ----- ----- <u>3년간</u> ----- -----

으로 한정한다]

가. ~ 다. (생략)

③·④ (생략)

제46조(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그 건설량의 3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2. (생략)

②·③ (생략)

제52조(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 ① 사업주체(사업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거나 사업계획상의 입주자를 확정하려는 경우에는 입

-----.

가. ~ 다.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46조(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① -----

-- 등재되어 실제 같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 -----

-----.

1.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52조(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 ① -----

주대상자(예비입주대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선정된 자 또는 사업계획상의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주택전산망을 이용한 무주택기간 및 주택소유 여부 등의 전산검색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뢰해야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 제50조제1항에 따라 청약접수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산검색을 의뢰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② ~ ⑤ (생략)

⑥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14일 이내에 전산검색 결과를 사업주체 또는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주택
청약업무수행기관에게 -----
-----, <단서 삭제>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
----- 주택청약업무수행기
관----- 사
업주체-----
-----.